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2. 12. 2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1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2. 12. 23 :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『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』의 한시정원 14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및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8명 등 22명을 증원하고,

- 증평출장소 농촌지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·인력 보강을 위해 괴산군으로부터 이관되는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72명 ⇒ 2,498명(증원 26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6명 ⇒ 1,440명(증원 24명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⇒ 54명 (증원 2명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포스트 엑스포 대책과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 14명과,

산림생태원 건립추진 및 도축 원유검사 등을 위한 인력보강 7명, 지방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위한 인원 1명 등 22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,

증평출장소 농촌지도담당 신설을 위하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4명을 괴산군과 농촌지도업무 위탁 행정협약에 따라 이관 받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승인된 26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
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인원을 52명에서 56명으로 4명 증원코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4명에서 56명으로 2명 증원함.
(제2조 제1호, 제4호)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12. 23.

제안자 : 김정복의원외

1. 수정이유

-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인원을 52명에서 56명으로 4명 증원코자 함

2. 수정 주요골자
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4명에서 56명으로 2명 증원함.
(제2조 제1호, 제4호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1호 중 “1,440명”을 “1,43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 중 “54명”을 “56명”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,472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40명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4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,472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38명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</p>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2,472명”을 “2,49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 중 “1,416명”을 “1,43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 중 “52명”을 “56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정원 14명은 2004년 12월 31까지로 한다.

신 구조 문 대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7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16명</u>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52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7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38명</u>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56명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○ 제21조(정원의 규정)

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당해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